_____(이하 '갑'이라 한다) 주식회사 파이어스톤투자자문 (이하 '을'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 본 계약서는 을은 갑의 투자자문자산에 대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, 갑은 을의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며, 투자자문자산 자문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투자자문 서비스의 범위]

1.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일체
    2. 투자자문자산에 편 출입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, 종목,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일체
    3. 투자자문자산에 편 출입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구분,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일체
    4. 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 사항
2.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, 팩스, 전자통신, 미팅 등 양자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투자자문을 제공한다.

제3조[투자 자문의 대상] 을이 갑의 투자자문자산에 대하여 자문함에 있어 그 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(금융투자상품)에 명시된 금융투자상품
2.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, 비상장 주식 등 지분증권
3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 채 증권, 사채 권 등 채무 증권
4. 기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투자증권

제4조[투자자문 서비스에 관한 을의 업무 절차 및 지침]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을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계약체결 전 – 회사소개, 투자자문계획, 계약권유문서 등 설명 및 서류 교부
2. 고객상담 – 투자자문계약 희망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성향, 투자목적 등 파악
3. 계약서 작성 – 투자자문계약 체결, 계약서 작성 및 교부
4. 자문 업무 수행 – 리서치 및 리스크 관리, 사전에 협의된 방법으로 투자자문 업무 수행
5. 자문 결과 평가– 자문 결과 평가, 고객의견 청취 및 수렴

제 5조[투자자문 담당자]

1. 당사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정성호 (대 표)	Northeastern University 금융 학 전공 졸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아이포스투자자문 주식운용/경영지원

2.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, 시세조종, 임의 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 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

제6조[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]

1. 을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0조[갑과 을의 금지사항]에 명시한 것과 같이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을 준수한다.
2. 을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, 평가한 결과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3. 고객의 투자자문 요구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.

제7조[고객이 부담할 책임] 정당한 투자 결과로 발생한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따라서,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.

고객 성 함 : (서명)

제8조[투자자문 수수료] 갑은 을이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투자자문 수수료는 선취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된다.
2. 투자자문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계약권유문서의 [별지1] 투자자문(일임)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과 같다.
3. 투자자문 수수료는 수수료 발생시 고객이 갑에게 입금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3일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는 다음과 같다.

신한 은행 100-032-532673 예금주: ㈜파이이스톤투자자문

제9조[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] 당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임원에 관한 사항

정성호	사내이사
황동선	감사

2.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, 시세조종,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
3. 대주주에 관한 사항

㈜파이이스톤 홀딩스	본인 (지분율 55.1%)
황동선	특수관계인(지분율 44.9%)

제10조[갑과 을의 금지사항]

1. 갑은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1)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본계약에 해당하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 이외의 자산 또는 제 3자의 자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
   2)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
   3)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2. 을은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) 투자자로부터 금전, 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보관, 예탁을 받는 행위

2) 투자자에게 금전, 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자의 금전,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,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
3)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자문 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

4)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
5) 투자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

6)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 11조[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]

1. 갑은 투자자문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.
2.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예고로 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조[계약의 내용]

1. 계약기간: 년 월 일부터 1 년간
2. 투자자문 자산: (현금 _____ 현금 외 _____)
3. 투자자문 수수료
   - 선취수수료 _____원 (계약투자자문자산의 0.5%)
   - 성과 수수료 기준 수익률(5%) 초과 분 의(10%)
4. 투자자문 담당자: _____
5. 거래증권회사 및 계좌번호: _____
6. 갑에 대한 통지 장소

   주소: _____

   연락처: _____ 이메일: _____

갑과 을은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___년 __월 __일

갑) 성명_____(서명/인)

생년월일_____

주소_____

*법인일 경우, 생년월일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, 성명란에 상호 및 대표이사 기재

을) 상 호: 주식회사 파이어스톤투자자문 (사업자 번호 836-88-00708)

대표 정 성 호 (인)

주 소: 서울 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, 2915호(도곡동, 대림아크로텔)

[첨부 1]

투자자문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

제1조[목적]

이 기준은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58조 제1항 및 제2항, 제97조 제1항 제6조에 의거하여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[수수료 율]

1. 투자자문 수수료는 만기정산형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단,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 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	선취수수료	성과 수수료	기준 수익률	정산 시점
투자자문수수료	계약금액의 0.5%	기준 수익률 초과분의 10%	연 5%	계약종료시점

제3조[선취수수료]

1. 선취수수료는 자문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 율을 적용합니다.

2. 선취수수료는 연 0.5%로 산정하며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추가로 징수합니다.

제4조[성과 수수료]

1. 투자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대해 평가차익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제2조의 요율 을 적용하여 성과수수료를 징수합니다. 단,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 율을 적용합니다.

제5조[계약 자산의 평가]

1. 계약 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,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,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일 전일(이하 평가기준일)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.

2. 계약체결일 전 권리락, 배당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, 배당금은 해당 자산의 입금(고)일자의 종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.

3. 계약기간 종료 후 자문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락, 배당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수령하게 되는 주식, 배당금은 계약종료 시 평가 자산에 반영하여 평가 금액을 조정합니다.

4.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 자산을 기준으로 계약 만기 또는 계약해지 시 평가 자산의 증감률로 한다. 평가 자산의 계산은 1항의 평가기준일을 준용합니다.

제6조[투자자문 수수료의 계산]

1. 투자(자문) 수수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자산에 제2조에서부터 제4조를 근거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.

2. 성과수수료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성과 수수료	(평가 금액-(원금*(1+기준수익률)))*성과수수료율	
계약해지 시	산정기준수익률	(연 수익률/12)*해당산정기간
	성과 수수료	(평가 금액-(원금*(1+산정기준수익률)))*성과수수료율

3. 제5조3항의 경우 예상배당금과 실제배당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자문 성과를 재평가하여 성과 수수료 및 해지수수료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.

제7조[계약해지 시 의 수수료]

1. 성과수수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2. 계약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선취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. 단,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3.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계약해지 수수료의 절반을 을에게 지급한다.

제8조[투자자문 수수료의 징수]

1. 선취수수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투자자산 추가증액일로부터 수수료 수취일 기준 3일이내에 제2조에서 제6조를 근거로 산정된 선취수수료 전액을 당사에 지급 하셔야 합니다.

2. 성과 수수료 및 해지수수료는 계약 만기 또는 계약해지 시 제2조에서부터 제7조에 의거 산정된 성과 수수료 및 해지 수수료 전액을 수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 하셔야 합니다.